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1
----------	------

제출연월일: 2019. 2. 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바,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어,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기관 확대(안 제4조)
- 나. 근거없는 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상위법령 위배되는 조문 삭제(안 제11조, 안 제12조)

3. 근거법규

-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0조
-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18. 10. 29.~11. 19.(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20호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중구의”를 “중구가”로 한다.

제3조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제목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적용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5.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관 및 시설·단체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 의무 등”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교육·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판매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 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호 중 “저탄소 제품”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제품”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공적이 탁월한 자”를 “구매담당자”로, “포상 할”을 “포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 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u>중구의</u>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u>다른 법규와의 관계</u>) (생략)</p> <p>제4조(<u>적용대상 공공기관</u>)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u>심의 · 자문</u>) <u>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자문은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u></p> <p>1. <u>녹색제품 구매 ·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p> <p>2. <u>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제1조(목적) ----- ----- ----- <u>중구가</u> ----- ----- ----- -----</p> <p>제3조(<u>적용범위</u>) (현행과 같음)</p> <p>제4조(<u>적용대상 기관</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u></p> <p>5. <u>그 밖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관 및 시설 · 단체 등</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3. <u>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u></p> <p>5. <u>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u>제6조(회의) ①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u></p> <p><u>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이 된다.</u></p> <p><u>제2장 녹색제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구매 의무 등</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8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p> <p>①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p>	<p>제8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p> <p>① -----</p>

현행	개정안
<p>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략) <p>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를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 	<p>----- -----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계획 2. ----- 교육·홍보 3. ----- ----- 판매 지원 4. ----- ----- 사업자 지원 5. (현행과 같음) <p>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u></p> <p>3. <u>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p> <p>4. <u>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u></p> <p>5. <u>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u></p> <p>6. <u>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② <u>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1. <u>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u></p> <p>2. <u>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u></p> <p>3. <u>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u></p> <p>4. <u>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u>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u></p>

현행	개정안
<p><u>제11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u> <u>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u> <u>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u> <u>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u> 	<p><u>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2조(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u> <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u> <u>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u>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u></p> <p>4. <u>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u></p> <p>5. <u>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u></p> <p><u>②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와 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대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u></p> <p>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u>저탄소 제품</u></p> <p>3. (생략)</p>	<p>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 「<u>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u>」에 따른 저탄소 제품</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u></p>	<p><삭제></p>
<p><u>제4장 보칙</u></p>	<p><삭제></p>
<p>제18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18조(포상) ----- ----- <u>구매담당자</u>----- ----- ----- <u>포상할</u> -----.</p>

근 거 법 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52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환경위생과	
	담당자명	이다겸	전화번호 052-290-37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0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위생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기관 확대 (안 제4조), 나. 근거없는 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상위법령 위배되는 조문 삭제(안 제11조, 제12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1월 03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환경위생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되는 부분 및 자치법규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환경위생과
- 직 책: 환경관리계장
- 이 름: 이 다 겸
- 연 락 처: 229-3711